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신장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18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4.

발 의 자 : 신장식 · 김선민 · 박은정
김준형 · 서왕진 · 강경숙
황운하 · 차규근 · 이해민
최혁진 · 정춘생 · 백선희
김재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이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이른바 “노동이사제”가 도입되었으나,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는 해당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.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에 근거하여 노동이사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, 정원 및 자격 등이 모두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에서의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

려는 것임(안 제58조 및 제59조의2 신설 등).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제3항 본문 중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”을 “제59조의2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“사람은”을 “사람과 제9항에 따른 노동이사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(이하 “노동이사”라 한다)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의 경우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.

1. 노동이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·훈련 및 편의제공
2. 안전부의권, 감사청구권, 정보열람권 부여

3. 이사회 출석 및 노동이사 업무 관련 활동시간 보장
4. 노동이사 활동이 가능한 적합한 보직으로의 변경
5. 해당 공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

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9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58조에 따라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, 사장의 연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

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,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
2.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3. 해당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
4. 해당 공사의 노동이사 중 1명

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6조제2항 전단 중 “제59조부터”를 “제59조, 제59조의2, 제60조부터”로 한다.

제78조제2항 중 “고객서비스”를 “고객서비스, 노동이사제 운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면에 관한 준비행위)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이 법 시행 전에 제58조(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노동이사 추천 또는 동의 방식 및 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다.

제3조(임원에 관한 적용례) 제58조(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2(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.

제5조(노동이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소속 근로자로서 제5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이사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·② (생략)	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경우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임원추천위원회”라 한다)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의 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59조의2에 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④ ~ ⑥ (생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<u>사람은</u>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	⑦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람과 제9항에 따</u> ----- <u>른 노동이사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⑧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(이하 “노동이사”라 한다)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 다만, 정원 300명 이상인 공사의 경우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⑩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은 노동이사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.

1. 노동이사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·훈련 및 편의제공

<신 설>

2. 안전부의권, 감사청구권, 정보열람권 부여

3. 이사회 출석 및 노동이사 업무 관련 활동시간 보장

4. 노동이사 활동이 가능한 적합한 보직으로의 변경

5. 해당 공사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

제59조의2(임원추천위원회) ① 제58조에 따라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, 사장의 연임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.

② 임원추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, 해당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

2. 해당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

제76조(설립·운영) ① (생략) ② 공단의 설립·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3조제1항, 제56조제1항 및 제3항, 제57조, 제58조, 제58조의2, <u>제59조부터</u> 제63조까지,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, 제64조, 제64조의2, 제64조의4부터 제64조의6까지, 제65조, 제65조의2, 제66조, 제66조의2, 제68조, 제69조, 제71조,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, 제72조 및 제73조,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으로, “사장”은 “이사장”으로, “사채”는 “공단채”로 본다. 제78조(경영평가 및 지도) ① (생략)	<u>3. 해당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</u> <u>4. 해당 공사의 노동이사 중 1명</u> <u>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 제76조(설립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59조, 제59조의2, 제60조부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제78조(경영평가 및 지도) ① (현
---	--

략) 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의 달성도, 업무의 능률성, 공익성, <u>고객서비스</u>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. ③ ~ ⑦ (생략)	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<u>고</u> <u>객서비스, 노동이사제 운영</u>----- -----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